

육상 스포츠등급분류 운영 지침

제정일: 2026. 3. 18.

제1조(목적)

1. 이 운영 지침은 장애인 육상 종목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스포츠등급분류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하 “연맹” 이라 한다)의 스포츠등급분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1. 장애인 육상 종목에 선수등록을 하고자 하는 모든 선수

제3조(용어의 정의)

1. “등급”이란 장애 유형 및 기능적 능력에 따라 장애인 스포츠 경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선수에게 부여되는 스포츠등급을 말한다.
2. “등급분류 심사”란 국내에서 장애인육상 선수의 장애 유형, 기능적 능력 및 경기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스포츠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사 절차를 말한다.
3. “재심사”란 이미 등급을 부여받은 선수에 대하여 다시 등급분류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등급 변경 신청”이란 선수의 장애 상태 또는 기능적 능력의 변화 등의 사유로 기존에 부여된 등급의 변경을 요청하기 위하여 연맹에 제출하는 신청을 말한다.
5. “등급 변경 심사”란 등급 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선수의 장애 상태 및 기능적 능력을 다시 평가하여 등급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등급분류 심사를 말한다.
6. “등급분류사”란 연맹이 공인하여 장애인육상 선수의 스포츠등급을 심사하고 결정하여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7. “견습사”란 최종 등급 결정권은 없으나 장애인육상 등급분류 심사에 참관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신규(New: N)”란 선수가 최초로 등급분류 심사를 받기 전에 부여되는 등급 상태를 말한다.
9. “등급 확정(Confirmed: C)”이란 선수의 장애 상태 및 기능적 능력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재검 없이 해당 등급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10. “재검 대상(Review: R)”이란 선수의 장애 상태 또는 기능적 능력의 변화 가능성이 있어 지정된 연도에 다시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급 상태를 말한다.
11. “스포츠등급 부적격(Not Eligible: NE)”이란 장애인육상 종목의 최소장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스포츠등급을 부여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2. “등급분류 미완료(Classification Not Completed: CNC)”란 등급분류 심사의 어느 단계에서든 등급을 부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13. “의도적 허위 수행”이란 선수 또는 관계자가 유리한 등급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수행 능력보다 낮은 것처럼 의도적으로 수행 능력을 왜곡하거나 연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보조인력”이란 선수의 이동, 의사소통, 장비 준비 등 등급분류 심사 과정에서 선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와 함께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며, 등급분류 심사의 진행을 보조할 수 있으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내 스포츠등급분류)

1. 연맹은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등급분류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등급분류 심사는 세계장애인육상연맹(이하 “WPA”라 한다)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등급분류 심사는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유형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밖의 장애 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시각장애는 (사)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에서 공인된 시각 등급분류사에 의한 국내 시각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② 지적(발달)장애 및 청각장애는 복지카드 또는 당해연도에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로 등급을 분류한다.
4. 신규(New: N)는 연맹이 별도로 공지하는 등급분류 신청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등급분류카드(별첨 1)
 - ② 등급분류 심사 기준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PI MDF 진단서(정확한 진단명, 명확한 손상 부위, 손상 시기가 기재되고 의료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것)
 - ③ 복지카드 사본(앞면 및 뒷면)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관련 서약서(별첨 2)
 - ⑤ 등급분류 신청비 50,000원
5. 등급분류 신청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6. 등급분류사가 명확한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제출 서류 외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 등급분류 심사 결과로 부여된 등급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8. 등급이 재검 대상(Review: R)으로 부여된 경우 지정된 재검 연도의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시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검 연도의 첫 장애인육상 국내대회가 5월 31일 이전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회의 참가 신청 마감일 전까지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등급분류 심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선수는 해당 연도의 선수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9. 선수의 국내 등급분류 심사 결과와 국제 등급분류 심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국제 등급분류 심사 결과를 적용하며, 국내 등급분류 심사 결과는 효력을 상실한다.
10. 국제 등급 상태가 재검 대상(Review: R)인 국가대표 선수는 지정된 재검 연도의 첫 국제 등급분류 심사 전일까지 해당 국제 등급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11. 선수가 장애인육상 종목의 최소장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선수에

게는 스포츠등급 부적격(Sport Class Not Eligible: NE)을 부여한다.

12. 연맹 또는 등급분류사는 등급분류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및 기록 등을 위하여 심사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13. 연맹은 등급분류 심사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분류 심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선수 외 등급분류 심사에 참여하는 자가 등급분류 심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등급분류 미완료(Classification Not Completed: CNC)로 지정되며, 해당 연도의 선수등록을 제한한다.
14. 불가피한 사유로 본 조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연맹은 원활한 등급분류 심사를 위하여 일부 절차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스포츠등급 재심사)

1.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①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등급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 ② 등급분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거나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 ③ 그 밖에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육상연맹 회장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각 시·도지부 및 선수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와 관련하여 연맹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재심사 결과는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종전에 부여된 등급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제1항에 따른 재심사로 인하여 등급분류 결과에 변경이 발생한 자가 국가대표 선수일 경우에는 당해 소속 단체 등에 통보하여 국가대표 자격 여부에 대하여 연맹의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한다.

제6조(이의신청)

1. 등급분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등급분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새로운 등급분류카드(별첨 1)
 - ② 기존 등급분류카드
 - ③ 등급분류 이의신청서(별첨 3)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관련 서약서(별첨 2)
 - ⑤ 복지카드 사본(앞면 및 뒷면)
 - ⑥ 이의신청비 300,000원
2.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등급분류사는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수용 여부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비승인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초 등급분류 심사에 참여한 등급분류사는 해당 재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4.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가 기존 등급분류 결과와 상이한 경우 이의신청 비용은 환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① 이의신청이 비승인되는 경우
 - ② 등급에 변동이 없는 경우
 - ③ 등급에 변동이 없고 지정된 재검 연도만 변경된 경우
 - ④ 등급에 변동이 없고 재검 대상(Review: R)으로 변경된 경우
5. 등급분류사가 명확한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 외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로 부여된 등급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종전에 부여된 등급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7. 그 밖의 사항은 제3조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스포츠등급 변경)

1. 등급을 받은 선수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 변경 신청을 통하여 등급 변경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급 변경 신청은 연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해당 연도의 대회 참가 이력이 있거나 선수등록으로 인한 혜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① 장애 정도가 심화되거나 완화된 경우
 - ② 좌식에서 입식으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③ 의족 또는 의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던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④ 프레임러닝(레이스러닝)에서 레이싱휠체어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⑤ 필드 종목에서 트랙 종목으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2. 등급 변경 심사를 받고자 하는 선수는 연맹이 별도로 공지하는 등급분류 신청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새로운 등급분류카드(별첨 1)
 - ② 기존 등급분류카드
 - ③ 스포츠등급 변경 신청서(별첨 4)
 - ④ 등급분류 심사 기준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PI MDF 진단서(정확한 진단명, 명확한 손상 부위, 손상 시기가 기재되고 장애 정도의 심화 또는 완화 여부가 의학 적·기술적으로 명확히 기재되며, 의료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것)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관련 서약서(별첨 2)
 - ⑥ 복지카드 사본(앞면 및 뒷면)
 - ⑦ 등급 변경 신청비 100,000원
3. 등급 변경 신청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4. 등급 변경 신청이 접수된 경우, 등급분류사는 계획된 등급분류 심사 일정 전에 등급 변경 신청 수용 여부와 등급 변경 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등급 변경 신청이 비승인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등급분류사가 등급 변경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 외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등급 변경 심사 결과로 부여된 등급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종전에 부여된 등급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7. 그 밖의 사항은 제3조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징계조치)

1. 연맹은 선수 또는 관계자가 유리한 등급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 심사를 받거나 제3조 제13항에 따른 의도적 허위 수행을 한 선수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법제상벌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4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연맹은 징계 조치 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등급분류카드)

1. 연맹에서 주최 및 주관한 등급분류 심사에서 발급한 등급분류카드만 인정된다.
2. 선수는 등급분류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
3. 연맹은 국제 등급분류를 받은 선수의 시·도 혹은 개인에게 국제 등급분류 결과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0조(등급분류사 자격 및 자격 유지 조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급분류사로서 국내 육상 선수의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 ① 세계장애인육상연맹(WPA)에서 인정한 등급분류사
 - ② 국내 육상 전습 등급분류사 중 등급분류사의 감독 하에 등급분류 심사에 3회 이상 참가한 자
 - ③ 그 밖에 원활한 등급분류 심사를 위하여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사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등급분류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사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나 의결 없이 등급분류사 자격을 상실하며 국내 육상 전습 등급분류사로 전환된다.
 - ① 등급분류사로서 연 1회 이상 연맹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등급분류 강습회 교육을 이수한 자
 - ② 등급분류사로서 연 2회 이상 연맹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등급분류 심사에 참여한 자

제11조(전습사 자격 및 자격 유지 조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습사로 등급분류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견습사는 등급분류 심사에 참관하여 보조할 수 있으나 최종 등급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 ① WPA에서 인정한 국제 등급분류사는 아니나, WPA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등급분류 강습회 교육을 이수한 자
 - ② 연맹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등급분류 강습회 교육을 이수한 자
 - ③ 타 종목에서 인정받은 국내 또는 국제 정식 등급분류사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견습사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① 등급분류사를 제외한 지도자, 선수, 심판 등 장애인체육 종목 관련 직책을 보유한 자
 - ②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견습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견습사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나 의결 없이 견습사 자격이 상실된다.
- ① 연 1회 이상 연맹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등급분류 강습회 교육을 이수한 자
 - ② 연 1회 이상 연맹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등급분류 심사에 참여한 자

제12조(등급분류사의 직무 및 책임)

1. 등급분류사는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등급분류 심사 및 재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등급분류사 서약서(별첨 5)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급분류사는 WPA 등급분류 규정 및 연맹 등급분류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바탕으로 분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3. 등급분류사의 등급분류 결과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연맹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경우, 연맹은 등급분류사에게 해당 선수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등급분류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등급분류 관련 활동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5. 등급분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 심사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① 선수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② 선수의 지도자 또는 해당 선수의 소속 관계자인 경우
 - ③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등급분류사는 등급분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선수의 장애 정보, 의료 정보 및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6항의 의무는 등급분류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등급분류 업무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3조(선수의 역할 및 책임)

1. 선수는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등급분류 심사 및 재심사와 관련하여 선수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서약서(별첨 6)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선수는 등급분류 심사에 참가할 때 보조인력과 동행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선수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조인력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3. 선수는 본인의 장애 상태 및 선수 경력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4. 선수는 등급분류 심사 이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관련 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를 받을 수 없다.
5. 선수는 개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맹 및 등급분류사에게 본인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6. 선수는 복용 중인 모든 약물, 사용 중인 의료기기, 수술 등을 통한 체내 삽입물 또는 주입 물질에 대하여 등급분류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7. 선수는 등급분류사로부터 부여받은 합리적인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책임)

1. 보조인력은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등급분류 심사 및 재심사와 관련하여 보조인력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서약서(별첨 7)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조인력은 반드시 등급분류 심사에 동행하여야 한다.
3. 보조인력은 선수의 장애 상태 및 선수 경력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4. 등급분류 심사 이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관련 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5. 보조인력은 선수의 복용 중인 모든 약물, 사용 중인 의료기기, 수술 등을 통한 체내 삽입물 또는 주입 물질에 대하여 등급분류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6. 보조인력은 등급분류사로부터 부여받은 합리적인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2026. 3.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회장의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받은 선수의 등급은 2027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2026년도에 장애인육상 등급분류 전면 재심사를 시행하며, 전면 재심사를 통해 부여된 등급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2025년 8월 22일 이전에 등급분류사 및 견습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첨 1)

등급분류카드

[Classification Card]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소속:		
*연락처:		
*장애명 및 부위: (Diagnosis and Level)		
신체적 특기사항: (Remark of Physical Examination)		

*경기종목	*장애유형	등급	검사일	검사자 및 서명

*별표 필수 기재

대한장애인육상연맹 귀중

〈등급분류 이의신청 신청서〉

등급분류 이의신청자:	(인)	연락처:	
이의신청 내용 (등급분류 심사 결과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			
등급분류 이의신청 비용	삼십만원(300,000원)	확인자:	(인)
이의신청 신청 결과 or 신청 비승인 사유			
등급분류사 확인	확인자:	(인)	
등급분류사 확인	확인자:	(인)	
상기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대한장애인육상연맹 귀하			

< 스포츠등급 변경 신청서 >

스포츠등급 변경 신청자:	(인)	연락처:	
변경 내용(6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하게 작성)			
스포츠등급 변경 신청 비용	일십만원(100,000원)	확인자:	(인)
스포츠등급 변경 신청 결과 or 신청 비승인 사유			
등급분류사 확인	확인자:	(인)	
등급분류사 확인	확인자:	(인)	
상기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대한장애인육상연맹 귀하			

